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591 발의연월일: 2025. 2. 28.

발 의 자: 한지아 · 박성훈 · 고동진

백종헌 • 임이자 • 서지영

정연욱 · 정성국 · 서일준

유용원 · 조경태 · 최보윤

의원(12인)

제안이유

현재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활발히 추진 되고 있으며, 개혁으로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과 함께 국민의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제고하는 것 역시 중요함.

현재, 군 복무에 따른 보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 대해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6개월을 추가로 산입하는 군 복무 크레딧 제도 와 출산 친화 여건을 조성하고, 여성 가입자의 수급 기회 확대를 위해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부터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는 출산 크레 딧 제도를 운영 중임.

다만, 군 복무 크레딧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해 인정 기간이 짧아 보 상 수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고, 출산 크레딧의 경우 출산 및 양육 에 소요되는 기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음. 또한 크레 딧을 노령 연금 수급 시 지원하게 되므로 지원 체감도가 부족하다는 의견도 제기됨.

이에, 군 복무 크레딧의 경우 병역의무 수행 기간 전체로 인정 기간을 확대하고, 수급 시점도 크레딧 발생시점인 병역의무 종료 시점으로 앞당길 필요가 있음. 출산 크레딧 역시 첫째 자녀부터 가입기간을 인정하도록 확대하고, 출산과 동시에 인정하여 지원 체감도를 제고하고 자 함.

또한, 크레딧 확대와 함께 현재 저소득 지역가입자가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는 경우 12개월 간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있는 보험료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과 지원 기간도 확대하여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성이 있음.

아울러, 다층노후소득보장 체계 내 연금 제도로 퇴직연금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금 운용에 전문성이 있는 국민연금공단도 사업자로 참여하여 퇴직연금을 운용할 수 있도 록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바 국민연금공단이 퇴직연금 사업자로 참여 시 위탁 사업의 수행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만큼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하고 군 복무 종료 직후부터 크레딧을 인정함(안 제18조).
- 나. 첫째 자녀부터 12개월씩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

- 되, 출산과 동시에 크레딧을 인정함(안 제19조).
- 다. 국민연금공단의 퇴직연금 위탁 운용 사업 수행 근거를 명확화함 (안 제25조).
- 라.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을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확대하고 지원기간을 36개월로 확대함(안 제100조의4).

법률 제 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 (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6개월"을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마친 때에는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입된"을 "산입되는"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입되는 가입기간에 대하여는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가입한 것으로 본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자녀를 출산한 때(자녀를 출산한 자는 가입한 때 출산시점을 가입이력으로 인정)에는 자녀 1명당 12개월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자녀 수의 인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입되는 가입기간에 대하여는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가입한 것으로 본다.

제25조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제11호 및 제12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사업제51조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삭제한다.

제10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지역가입자로서 제9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고 있는 자"를 "지역가입자"로, "연금보험료 중"을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 중"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12개월"을 "36개월"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원 또는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 및 법률 제1114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을 것
-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의 소득을 얻을 것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제19조, 제5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8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최초로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부터 적용한다.
- 제3조(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자녀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2008년 1월 1일 부터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의 전날까지 얻은 자녀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연 행	게 성 안
제18조(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	제18조(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
기간 추가 산입) ① 다음 각 호	기간 추가 산입) ①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마친 때에는 「병역법」에 따른
산입되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
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u>에는 6개월</u> 을 가입기간에 추가	
로 산입한다. <u>다만, 「병역법」</u>	<u><단서 삭제></u>
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	
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한다.	
<u>니이가 아니인니.</u>	
<u>디어지 아디인디.</u>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산입되는 가입
1. ~ 4. (생 략)	
1. ~ 4.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산입되는 가입
1. ~ 4.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산입되는 가입 기간에 대하여는 제51조제1항
1. ~ 4.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산입되는 가입 기간에 대하여는 제51조제1항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절
1. ~ 4.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산입되는 가입 기간에 대하여는 제51조제1항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절 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가입한
1. ~ 4. (생 략)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산입되는 가입 기간에 대하여는 제51조제1항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절 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가입한 것으로 본다.
1. ~ 4. (생 략) < <u>신 설></u>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병역	② 제1항에 따라 산입되는 가입 기간에 대하여는 제51조제1항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절 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가입한 것으로 본다.
1. ~ 4. (생 략) < <u>신 설></u>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한	② 제1항에 따라 산입되는 가입 기간에 대하여는 제51조제1항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절 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가입한 것으로 본다.
1. ~ 4. (생 략) < <u><신 설></u>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한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② 제1항에 따라 산입되는 가입 기간에 대하여는 제51조제1항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절 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가입한 것으로 본다.

1. • 2. (생 략)

③ (생 략)

제19조(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 제19조(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 가 산입) ① 2 이상의 자녀가 있 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 (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 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다만, 추가로 산입하는 기간은 50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자 녀 수의 인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1. 자녀가 2명인 경우 : 12개월 2.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둘 째 자녀에 대하여 인정되는 1 2개월에 2자녀를 초과하는 자 녀 1명마다 18개월을 더한 개 월 수

<신 설>

1. · 2. (현행과 같음)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가 산입) ① 가입자 또는 가입 자였던 자가 자녀를 출산한 때 (자녀를 출산한 자는 가입한 때 출산시점을 가입이력으로 인정) 에는 자녀 1명당 12개월을 가입 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자녀 수의 인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삭 제> <삭 제>

> ② 제1항에 따라 산입되는 가입 기간에 대하여는 제51조제1항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에 해 당하는 소득으로 가입한 것으로

②·③ (생 략)

제25조(공단의 업무) 공단은 다음 의 업무를 한다.

1. ~ 9. (생 략) <신 설>

10. · 11. (생략)

제51조(기본연금액) ① 수급권자의 기본연금액은 다음 각 호의금액을 합한 금액에 1천분의 1천20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다만,가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1년(1년 미만이면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마다 본문에 따라계산한 금액에 1천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더한다.

- 1. (생략)
- 2.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 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연 도별 재평가율에 의하여 연금

<u>③</u> · <u>④</u>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제25조(공단의 업무)
1. ~ 9. (현행과 같음)
10.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에 따른 퇴직연금 사업
<u>11</u> .· <u>12</u> . (현행 제10호 및 제11
호와 같음)
제51조(기본연금액) ①
1. (현행과 같음)
2
۵.

보다

수급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 산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을 총 가입기간으로 나눈 금액. 다만,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 하여야 하는 금액은 그 금액 으로 한다.

가. (생략)

나. 제18조에 따라 추가로 산 입되는 가입기간의 기준소 득월액은 제1호에 따라 산 정한 금액의 2분의 1에 해 당하는 금액

다. 제19조에 따라 추가로 산 | <삭 제> 입되는 가입기간의 기준소 득월액은 제1호에 따라 산 정한 금액

②·③ (생 략)

제100조의4(지역가입자에 대한 연 금보험료의 지원) ① 국가는 국 민인 지역가입자로서 제91조제 1항제1호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고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기 간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가. (현행과 같음)
<u> (삭 제></u>

② · ③ (현행과 같음)

세100조의4(지역가입자에 대한 연
금보험료의 지원) ①
<u>지역가입자</u>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
<u> 험료 중</u>
36개월

것. 다만,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아 납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2. (생략) <신 설>
- ② (생략)
- 1. 연금보험료 납부를 재개할 1.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연금 보험료 지원 또는 법률 제854 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 및 법률 제11143 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에 따른 연금보험 료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을 것
 - 2. (현행과 같음)
 -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의 소득을 얻을 것
 - ② (현행과 같음)